

#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 노동 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

윤홍식(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 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사적영역의 분리를 (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부모권(모성권+부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 1. 문제제기 : 왜 가족정책인가?

최근 가족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는 시민들의 통념 속에 자리 잡은 당위적인 '가족'의 상과 일상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가족'의 실제 사이의 불일치를 점점 더 심화시켜가고 있다. 특히 지난 십여 년간 급격히 진행되었던 합계 출산율의 저하, 이혼율의 증가, 생계를 비판한 가족의 동반 자살 등은 '매정한 사회의 안식처'라는 가족에 대한 우리사회의 당위적 믿음이 허구적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든든한 시민의 안식처로써의 가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듯 하다. 더구나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1) '매정한 세상에서의 안식처(Haven in a heartless worlds)'는 크리스토퍼 Lasch(Christopher Lasch)의 1977년 저작의 제목에서 차용한 것이다.

요구된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을 개별가족의 자기부양을 통해 해소해왔던 한국사회에서, 1997년 경제위기와 함께 급격히 진행된 가족의 변화는 실로 총체적 ‘위기’라고 지칭될 수 있을 것이다<sup>2)</sup>.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가족과 그 구성원에 대한 복지를 전적으로 담당했던 가족변화의 영향력은 가히 파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변화 자체에 있기 보다는 그 변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방식에 있다.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변화의 핵심적 문제에 근거해, 대안을 통합적으로 고민하기 보다는, 파편적·현상적 대응만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위기’의 대표적 현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우리사회는 개별 가족 및 그 구성원에게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계도하는 것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sup>3)</sup>. 그러나 기든스(2000[1998])가 주장한 것과 같이 결혼의 신성함을 재확인하고 가족의 전통적 기능과 형태를 강화하자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일 수 있다. 실제로 서구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출산력은 전통적 가족가치와 형태의 강화 문제이기보다는 육아휴직제도, 여성의 고용상태 등 일과 가족의 양립과 같은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leebos, 2003). 전통적 가족의 가치와 형태가 강조되고 있는 스페인, 이태리 등 남부유럽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이 유럽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Misra & Moller, 2005; Esping-Andersen, 1996; Salsa, 2002; Valiente, 2002). 즉, 가족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대응은 전통적 가족형태와 가치 내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변화들에 대한 합리적 대안은 ‘전형적 가족’을 근간으로 제도화된 현재의 복지국가 틀 내에서 그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 가족의 변화는 전통적 복지국가의 정책과 심각한 충돌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Leira, 2002). 이러한 현실에서 바람직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든스(2000[1998])는 가족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써 가족정책은 복지국가 재편을 평가하는 시금석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즉, 복지국가 재편은 가족정책을 통해 가족과 가족 구성원의 필요와 국가의 필요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생계부양자로서 여성의 지위변화가 후기산업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a defining element)이라면 (Esping-Andersen, 1996), 이에 수반되는 가족 내 보살핌 노동의 약화에 대한 대응은 복지국가 재편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남성 생계부양자와 보살핌의 주체로서 여성이라는 성별분리에 근거한 복지체계는 가족의 변화로 야기되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욕구를 감당할 수 없다.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의 약화는 전통적 복지국가에게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Mahon, 2002), 그 핵심에 바로 가족정책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먼저 선행되는 두 가지 주요한 쟁점들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두 가지 선행되는 쟁점 중 하나는 가족정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차이와 평등에 대한 논란이다. 특히 차이와 평등에 대한 논쟁은 Pateman(1987)이 제기한 Wollstonecraft의 딜레마<sup>4)</sup>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차이와 평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가족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단순히 일과 가족의 양립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립 주체가 누구인가’에 있다는 것을 논하고

2) 서국에서의 가족의 위기가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부담을 국가 및 사회에서 가족으로 전가되는 과정 중에 나타난 현상(이미경, 1999)이라면 한국에서 위기는 전통적으로 노동의 재생산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던 가족이 더 이상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Wollstonecraft의 딜레마는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어머니로 규정하는가 아니면 노동자로 규정하는가에 대한 논란을 일 컸는다.

자 한다. 다음으로 차이와 평등에 대한 논의에 근거해 본 연구는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를 위한 가족정책의 관점, 틀, 영역(내용), 방향에 대한 대안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남성성의 시장노동에 근거한 사회보장체계의 완성 및 보편적 생계부양자에 대한 요구 등 전통적 복지국가 과제의 완결과 복지국가 재편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보편적 보살핌(노동)에 대한 요구가 한국사회에서 중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사회의 중층적 요구에 대해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성’이 어떠한 함의를 제시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1930년대 스웨덴 가족의 변화에 대한 보편주의적 가족정책의 대응이 현재 스웨덴의 복지국가의 출발점이었다는 사실과 (Lijestrom, 1978; 미야모토, 2003[1999]), 보편적 보살핌 노동에 대한 요구가 현재 스웨덴을 비롯한 서구 복지국가 재편의 핵심적 사안임을 감안할 때 (Mahon, 2002; Bergqvist & Nyberg, 2002) ‘가족정책’을 성 통합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복지국가의 초입에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선행되는 논쟁에 대한 검토

가족정책에 대한 논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정의에 대한 논란이고, 둘째는 일과 가족의 양립이라는 가족정책의 핵심적 과제를 둘러싼 논쟁이다. 본 장에서는 먼저 가족정책의 정의에 대한 상반된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가족정책이 사회정책과 구분되는 독자적 정책 영역으로 자리할 수 있는가가 주요한 논점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가족 및 구성원의 삶이 시장에서의 화폐소득과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살핌을 통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 했을 때 가족 및 가족 구성원이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데 가족정책이 어떻게 개입해야하는가를 주요한 쟁점으로 논의할 것이다.

### 1) 가족정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Harding(1996)은 가족정책에 대한 합의된 정의도 분석적인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일부학자들은 가족정책이 독립적 영역이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Kamerma n & Kahn, 1978; Zimmerman, 1992, 1995) 다른 학자들은 가족정책과 사회정책의 차별성은 없다고 강조 한다 (Myrdal, 1968, Zimmerman, 1992 재인용). 먼저 가족정책이 독립적인 정책이란 주장은 1970년대 Kamerman과 Khan(1978)의 논의로부터 출발한다. Kamerman과 Khan은 가족정책을 정부가 가족에게, 가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Zimmerman(1992)도 가족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정부가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Zimmerman(1992)은 구체적으로 가족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개별적이지만 상호 연관되어 있는 정책선택의 집합체로서 가족정책을 정의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족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Kamerman, Khan, Zimmerman의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가족정책은 가족의 개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기보다는 단위로써의 가족을 대상으로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진숙, 2003; 최경석·김양희·김성천·김정운·박정윤·윤정향, 2001; 장혜경·김혜경·이진숙·김현주·장화경, 2002; 김성천, 2000). 예를 들면, 이진숙(2003, 21)은 가족정책을 “국가가 가족의 기능이나 역할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원하는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체계적인 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양옥경(2002)은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자체 보다는 목적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가족정책이란 “목적이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하여 주고, 가족 내 개개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주는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사회적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족정책 또는 가족복지정책이란 표현 대신 가족지원정책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김수정(2004)은 어머니와 아동의 필요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련된 정책을 가족지원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 변화순(1995)은 기존의 논의들과는 달리 가족정책을 단위로서 가족의 관점과 함께 개별 가족 구성원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가족정책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정책의 정의들을 통해 가족정책을 사회정책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독립적 시민권 확립을 위해 전제되는 ‘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보편적 생계부양자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가족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다른 측면에서는 노동시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이므로 노동정책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을 수급단위로 하는 연금, 실업급여(고용보험) 등은 사회보장정책의 핵심적 정책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개별 수급자가 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원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가족정책의 부분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호함 때문에 Myrdal(1968, Zimmerman, 1992 재인용)은 가족정책이란 사회정책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가족정책을 가족의 관점에서 접근하든, 구성원의 관점에서 접근하든 이러한 접근은 거의 대부분의 사회정책을 가족정책의 영역에 포괄하는 것으로 가족정책의 실체가 없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윌렌스키, 루버트, 한, & 재미슨, 1992[1982]).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가족정책만이 가지는 문제는 아니다 (Gilbert & Specht, 1986). 소위 사회정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사회정책도 가족정책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문제는 가족정책이 가지는 고유한 문제이기보다는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모호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해당 정책이 다른 정책과 다른 배타적 영역을 갖는 독립적인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것 보다는 어떠한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가족정책은 단위로서의 가족과 개별 가족구성원의 이해와 요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분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것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개별 시민의 정체성이 다차원적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또한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민들의 이해에 따라 정책은 가족정책일 수도 있고 다른 정책의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다중적 정의가 자칫 가족정책에 대한 논의 자체를 지나치게 추상화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가족정책을 ‘가족 및 구성원의 복지’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정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시민의 복지는 시장과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득활동과 보살핌노동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가족정책은 개별구성원의 시장노동과 보살핌 노동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한다. 그러므로 가족정책의 중심과제는 첫째, 개별 구성원이 시장에서의 소득활동과 가족 내에서의 보살핌 활동에 대한 보장에 관련된 문제와 둘째, 가족 구성원의 소득활동과 보살핌 활동 간의 조화(양립)를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하는 ‘일과 가족의 양립’문제로 집중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일과 가족의 양립을 둘러싼 논란 : 차이와 평등의 문제

일과 가족의 양립이 가족정책의 핵심적 과제라는데 동의한다면, 차이와 평등에 대한 문제가 가족정책

의 가장 본질적인 논쟁점일 것이다. Pateman(1987)이 Wollstonecraft<sup>5)</sup>의 딜레마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여성(어머니)의 시민권적 권리가 남성(아버지)과의 평등에 근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이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는 현재까지 계속되어온 페미니즘 중요하고도 해결되지 않은 논쟁이다 (Lorber, 2005[2001]). 특히 평등과 차이에 대한 논쟁은 가족정책의 관점, 틀, 영역(내용),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실제로 가족정책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일과 가족의 양립' 정책은 여성의 모성권을 강조하는가, 아니면 노동권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세 가지 주요한 일과 가족의 양립형태를 평등과 차이의 논쟁에 근거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절에서는 그 동안 일과 가족의 양립문제가 양립 여부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일과 가족의 양립은 양립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차이에 근거한 양립', '순차적 양립', '보편적 양립'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표 1> 주체의 관점에서 본 일과 가족의 양립형태

양립형태	차이에 근거한 양립	순차적 양립	보편적 양립
양립의 주체	단위로써 가족	여성	여성과 남성
양립의 방향	성별분리에 근거한 전형적 가족형태 지향	보편적 생계부양 지향 (2인 생계부양자)	보편적 생계부양과 보살핌 지향
이론적 근거	① 모성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것이며, ② 집단으로써 가족의 이해와 가족을 구성하는 개별구성원의 이해는 일치함	① 여성에게 양육자와 생계부양자의 이중적 역할 부여 하나, ② 암묵적으로 보살핌의 주체로서 여성의 특수성 인정	①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생계부양자와 보살피는 자라는 역할 부여함으로써, ② 모성권과 노동권의 대립 해소
대표적 정책사례	모성수당, 모성임금, 케어수당(임금) 등	부모휴가, 모성휴가, 부성휴가	아버지 할당제 (부모휴가)

(1) 차이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 성별분업의 고착화

차이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은 Talcott Parsons가 주장한 전형적 가족 유형에서 찾을 수 있다. Parsons(Parsons & Bales, 1955)는 '전형적 가족(the family)'이 일과 가족을 양립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형태라고 주장한다<sup>6)</sup>. 성별분업에 근거한 전형적 가족은 남성(아버지)에게는 경제적 부양의 역할을, 여성(어머니)에게는 아동을 돌보고 보살피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일과 가족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족형태다. 그러므로 전형적 가족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 주체는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구성원이기보다

5) Mary Wollstonecraft(1759~97)는 사회에서의 여성의 열등한 지위가 성 역할에 대한 잘못된 사회화, 교육의 결과라고 주장함으로써 근대 페미니즘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 여성학자다. 그녀의 사상은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en'이라는 저서를 참고하라.

6) Parsons의 이러한 주장은 현재의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효용극대화(the assumption of utility maximization)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 대표적으로 Becker(1991)에 의하면 효용극대화 가정에 근거했을 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서 남편과 아내는 자신들의 상대적 우위성(comparative advantage)에 따라 가사일과 시장일로 특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Becker는 첫째, 여성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동을 기르고 양육하고, 가사 일을 하는데 투자하도록 자연스러운 생물학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경제적 관점에서 성별에 의한 노동 분업은 가구 내 남성과 여성의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별분업은 결혼한 남성과 여성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 시킨다는 것이다.

는 개별 구성원의 집합체로써 가족(the family)과 남성이 참여하고 있는 노동시장으로 대표되는 사회이다. 즉, 단위로써의 가족과 사회가 주체가 된 입과 가족의 양립을 통해 전형적 가족의 필요와 노동시장의 필요가 상호의존적으로 충족되는 것이다<sup>7)</sup>.

Parsons의 이러한 주장은 두 가지 전제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하나는 모성은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주장<sup>8)</sup>과 다른 하나는 단위로써 가족의 이해와 가족을 구성하는 개별 구성원의 이해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전제에는 주요한 논리적 모순이 내재해 있다. 먼저 모성은 여성에게 자연적이고, 선천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상반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Eisenstein (1981)이 지적한 것과 같이 생물학적 모성과 사회적 모성은 구분되어 져야 한다는 점이다. 생물학적 모성은 임신, 출산, 수유 등 여성의 특별한 신체적 특성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그 밖에 아동을 돌보고 기르는 일은 생물학적 모성이 아닌 사회적(정치적) 모성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주장은 근대 페미니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Wollstonecraft(1988[1972])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Wollstonecraft는 가정 내에서 보살핌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이 고정된 것은 여성에 대한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화(교육)의 결과라는 것이다. 즉, 임신, 출산, 수유를 제외한 나머지 활동, 여성이 아동을 기르고 양육하는 것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자연적이고, 타고난 생물학적 모성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모성이라는 것이다<sup>9)</sup>. (둘 간의 명백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길리건(1982)과 초도로우(1978)도 모성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sup>10)</sup> (Freedman, 2002[2001]과 Lasch, 2004[1998]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여성주의적 관점에 근거한다면 Parsons의 기능적 분석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성별에 따라 남녀의 역할을 생계부양자와 보살피는 자로 나눌 어떠한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은 집단으로써 가족과 개별 구성원 각각의 이해가 일치한다는 전제에 대한 의문이다. 왜냐하면 현실세계에서 개별 구성원의 이해와 단위로써 가족의 이해가 (항상)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이 가족 내에서 행하는 보살핌 노동은 남성이 시장에서 행하는 노동과 달리 잉여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노동으로 간주되어 화폐적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 여성의 노동에 대해 화폐적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여성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 자본주의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적 시민권이 독립적 개인의 계약과 사적소유에 대한 권리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박순우, 2004), 화폐적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보살핌에 종사하는 여성은 근대적 시민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즉, 시장에서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소득(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박탈당한 여성은 처음부터 근대적 시민권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듯 시민권을 남성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Freedman, 2001; Pateman, 2001[1988]) 비록 같은 가족을 구성하고 있더라도 시민인 남성과 시민권에서 배제된 여성의 이해가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Parsons가 주장한대로 남성과 여성의 상호보완적 이해가 단위로써 가족의 이해를 증진시킬지는 모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Becker(1991)가 주장한 것과 같이 남성과

7) 이러한 논리는 노동분업을 사회와 개인간의 관계로 이해했던 Durkheim(1960[1933])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8) Parsons(Parsons & Bales, 1955)는 어린아동에 대한 수유와 돌봄을 통해 여성의 강력한 우선권(모성)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가족 내에서 생물학적 기능으로부터 면제된 남성은 여성의 모성과는 다른 방향에서 자신을 특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9) Eisenstein(1981)은 이러한 모성의 성립을 정치적 모성(political motherhood)라고 정의하고 있다.

10) 길리건(Freedman, 2002, 48)은 “여성과 남성의 도덕적 태도의 차이는 어떤 내재적인 생물학적 본질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라는 요소들이 재생산의 생물학과 결합하여 남녀의 경험을 형성하고 세스들 사이의 관계를 조직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초도로우는 모성이 자연적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주장도 거부한다. 초도로우는 의식적 선택은 아니지만 (어린나이에) 무의식적 선택에 의해 여성에게 모성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여성이 (결혼을 통한) 단위로써 가족을 유지한다는 전제를 충족시킬 때 가능한 것이다. 다른 말로하면, 결혼해체(이혼)의 순간 여성과 남성의 이해는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Chiswick & Lehrer, 1990; Coontz, 1992). 실제로 대부분의 여성은 이혼 이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Duncan & Hoffman, 1985; Hanson, McLanahan, & Thomson, 1998, 윤홍식 2003). 특히 신자유주의 이념의 지배 하에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족의 안정화’에 대한 요구 (이미경, 1999; Ozawa & Yoon, in press)는 여성의 무급노동을 기반으로 노동력의 안정적 재생산을 확보하려는 시도으로써, 단위로써 가족과 개별 구성원으로서 남성의 이해와는 일치할지 모르지만 여성의 이해와는 전면적으로 대치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와 가족 구성원간의 일치된 이해를 전제하는 차이에 근거한 양립은 가족과 사회에서 성별 분업을 고착화시킴으로써 남성만을 위한 양립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차이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은 현실 가족정책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까? 차이에 근거한 양립정책의 전형적인 예는 여성의 위치는 가족이며, 여기서 행하는 보살핌의 노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인식과 연관되어 있다 (Stoehr, 1991, Gauthier, 1996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차이에 근거한 일과 가족 양립 정책은 가족 내에서 행하는 여성의 보살핌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대표적 정책으로는 가족 내에서 아동을 돌보는 부·모 (실질적으로는 모)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이다. 독일의 경우 (비록 자산조사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2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족에 대해 부모의 취업여부 및 부모휴가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양육수당 (Erziehungsgeld)을 지급하고 있다<sup>11)</sup> (Leria, 2002). 더불어 독일의 사회학자들은 아동양육임금(child care salary)을 제안하고 있는데, 기본적 이념은 부·모의 노동시장에서의 활동과 가족 내에서 행하는 양육에 대해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노르웨이에서는 비록 보살핌 노동에 대한 현금 지원의 문제가 취학 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75~80%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한시적으로 종결되었지만 어머니가 가족 내에서 행하는 보살핌 노동에 대한 현금지원(a caring wage)은 오랫동안 중요한 논쟁으로 남아 있다. (Leria, 2002; 1998). 현금지원 형태는 아니지만 노르웨이의 경우도 (90%이상이 여성인) 한 부모가 일을 중단하고 가정 내에서 어린자녀를 돌볼 기회를 제공하고, 이 기간을 국민연금(the National Insurance)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고 있다 (Leria, 1998). 또한 1992년부터는 집에서 7세 이하의 아동, 노인, 병자,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국민연금에서 보충적 연금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가족 내에서 행하는 여성의 돌봄 노동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여성이 지속적으로 가족 내에서 돌봄 노동을 수행할 조건을 창출해 (Lewis, 1993) 차이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들이다.

정리하면 이러한 양립 정책들이 단위로써의 가족과 남성의 이해에 복무할지는 몰라도 여성의 이해와는 배치되는 ‘일과 가족의 양립’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살핌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고용문제 등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보다는 오히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sup>12)</sup> (Leria, 2002). 더불어 이러한 정책들은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 어머니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가족의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이 되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윤홍식, 2004). 결국 현실 세계에서 차이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정책은 전형적 가족과 시장

11) 독일에서 아동양육임금 수급대상은 3살 이하의 아동을 가진 부모에서, 7세 아동까지 확대되었고, 중국적으로 0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 확대된다.

12)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Lasch(2004[1998])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직업을 가지는 가족을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시민들에게 가족 내 모든 성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족만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의 양립정책에 다름 아니며, 일과 가족의 양립을 여성 시민권의 제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순차적 일과 가족의 양립: 평등 그러나 해소되지 않는 차이

기혼여성의 취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차이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은 더 이상 유용한 양립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노르웨이 경우에서 보듯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살핌 노동에 대한 보상을 둘러싼 논쟁은 기혼여성의 높은 취업률로 인해 그 의미가 반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Leria, 1998). 오히려 현재의 복지국가는 여성에게 보살핌노동과 시장노동의 이중부담을 강제하고 있다. 여성은 여전히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살핌의 주요 책임자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부차적일 지라도) 새롭게 요구되는 생계부양자의 역할 또한 감내하기를 요구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서구 사회의 주된 일과 가족의 양립 형태는 대부분 순차적(sequential) 일과 가족의 양립정책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즉, 가족 내 보살핌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 여성은 가족으로 돌아오고, 해당 욕구가 해소되면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함으로써 순차적으로 일과 가족의 양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윤홍식, 2004).

미국,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과 같은 선진산업사회를 연구한 Myrdal과 Kein(1956, Leria, 2002에서 재인용)은 '순차적 일과 가족의 양립' 정책을 차이에 근거한 양립정책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순차적 양립정책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살핌의 주된 책임을 여전히 여성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에 근거한 양립정책과 유사하나, (부차적이지만) 생계부양자로서 여성의 지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차이에 근거한 양립 정책에 비해 성별 분업이 완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Leria, 2002). 즉 순차적 양립정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해 Parsons의 차이 근거한 전형적 가족과 노동시장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모색에도 불구하고 성별분업(차이)에 근거한 Parsons의 가족모형의 핵심적 내용은 (수정된 형태이기 하지만) 순차적 양립정책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남아 있다.

순차적 일과 가족의 양립정책은 현재 서구 가족정책의 주요한 정책들로 제도화 되어있다. 순차적 양립정책은 (명목적이건 실제적이건 관계없이) 여성이 아동양육과 가사에 대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동시에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간에) 노동시장에서의 소득활동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순차적 양립정책은 여성의 관점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정책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모성휴가(maternity leave)와 부모휴가(parental leave) 등이 있다. 먼저 모성휴가 정책은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여성의 참정권 획득 이전부터 제도화된 여성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로서 (1890년부터) 취업의 연속성 보장을 전제로 여성에게 출산전후로 부여되는 휴가다 (Branne & Moss, 1997). 현재 거의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sup>13)</sup>에서 유급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짧게는 14주(독일, 그리스, 아일랜드)에서 가장 길게는 26주(프랑스)까지 보장하고 하고 있다 (Moss and Deven, 2000). 모성휴가는 아동출산이라는 가족 내의 욕구가 발생했을 때 여성(어머니)의 위치를 노동시장에서 가족으로 이동시켜, 여성이 출산과 양육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다. 즉 모성휴가는 여성의 인생주기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따라 여성이 순차적으로 노동시장과 가족을 오가면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13) 노르웨이의 경우 독립적인 모성휴가가 제도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아동 출산 전 3주와 출산 후 6주를 부모휴가 기간 내에서 (모성)휴가를 어머니에게 할당하고 있다 (Moss and Deven, 2000). 이러한 관계로 모성휴가 기간동안의 소득보존 수준은 부모 휴가와 연동되는데 1993년부터 부모휴가를 52주 사용할 경우 임금의 80%를 보존해주며, 42주를 사용할 경우 임금의 100%를 보존해 준다 (Leria, 1998).



대표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그러나 거시적 측면에서 모성휴가제도는 노동시장에 여성의 (상대적) 저임금과 관련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김태홍·김난주, 2003), 모성휴가제도가 오히려 성별분업을 강화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력단절로 인한 여성의 낮은 임금은 여성이 가정 내에서 아동을 돌볼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낮춤으로써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대신 여성의 일이라고 간주되는 가족 내 보살핌 노동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부모휴가<sup>15)</sup>는 모성휴가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일하는 부 또는 모가 노동시장에서 나와 가정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한 정책이다 (Leria, 2002). 형식적이지만 성 중립적 특성으로 인해 부모휴가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순차적 일과 가족의 양립 정책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휴가의 대부분을 여성(어머니)이 이용한다는 사실은 부모휴가가 여성의 순차적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가장 여성 친화적인 가족정책을 구현하고 있다는 스웨덴에서조차 전체 부모휴가 기간의 대부분인 91.0%를 여성이 사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는 휴가기간의 99.0%를 여성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Bruning & Platenga, 1999-Leria, 2002)<sup>16)</sup>. 중요한 것은 여성이 남성과 같이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중립적인 부모휴가제도의 이용에서 나타나듯 가족 내에서의 성별분업은 Parsons의 전형적 가족처럼 여전히 고착화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Charles, 2000). 물론 부모휴가가 성 중립적인 정책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성역할을 고정시키는 제도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Moss & Deven, 2000). 더구나 부모휴가제도의 효과는 휴가기간과 소득보장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성휴가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대부분 이용하는 부모휴가가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단절을 유발하고, 이것이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를 더욱 낮춤으로써 가족 내에서 성별분업을 고착화 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리하면 순차적 일과 가족의 양립정책은 양립의 주체가 차이에 근거한 양립과 달리 '단위로써의 가족'이 아니라 '여성'으로 전환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만, 문제는 남성(아버지)은 일과 가족의 양립 문제에서 여전히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순차적 양립을 통한 2인 생계부양자 모형에 감추어진 진실은 가족 내 보살핌의 필요를 여성과 남성이 함께 나누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Leria, 2002). 그러므로 남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순차적 양립정책은 차이에 근거한 양립정책과 마찬가지로 남성 자신이 참여하는 노동시장(사회)과 단위로써 (여성의 돌봄 노동으로 지탱되는) 가족의 양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순차적 양립정책 또한 여성이 가족 내에서 전통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함으로써 공적영역인 노동시장에서 성별 차이를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종국적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 일할 권리와 독립적 가구를 형성·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Orloff(1993)가 주장한 완전한 시민으로서 여성의 시민권을 제약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 (3) 보편적 일과 가족의 양립: 평등을 향하여 그러나 너무나 느린 변화

14) 모성휴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O'Connor, Orloff, & Shaver (1999), Leira (2002, 1998), Gauthier (1996), Michel & Mahon, (2002, eds.)를 참고하라.

15) 부모휴가(Parental leave)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제165호와 유럽연합의 명령(Directive)에 의하면 모성휴가 기간이 끝난 이후에 부 또는 모가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제도

16) 스웨덴은 450일간의 유급부모휴가를 시행하고 있으면 프랑스에서는 아동의 나이가 3세가 될 때 까지 부 또는 모에게 유급 부모휴가를 주고 있다 (Moss & Deven, 2000).

스웨덴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Rita Liljestrom(1978)는 1970년 유럽의 가족정책이 전통적 역할을 하는 어머니와 1인 생계부양자인 아버지의 모형으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가 생계부양자가 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가족형태가 성별분업에 근거한 전형적 가족에서 성에 따른 구분 없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을 함께 나누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Liljestrom이 상징한 가족에는 생계부양자, 시민권, 여가의 문제에서 동등한 여성과 남성이 존재한다. 비록 Liljestrom은 이러한 가족형태를 지향하는 것이 보편적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향하는 정책이라고 적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현재 많은 여성주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 생계부양자와 양육자 모형을 의미 한다. 부모가 동등하게 양육에 참여한다면 성별차이는 해소될 것이라는 Chodorwo(1978, Freedman, 2003[2001] 재인용)의 주장, Fraser(2000)의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형(universal breadwinner model)과 보편적 양육자 모형(universal caregiver model), Lewis와 Ostner(1995)의 이인생계부양자 모형(a dual-breadwinner model), Sainsbury (1999)의 개인 생계부양-양육자 모형 (a individual earner-carer regime), 여성의 시민권에 근거해 남성을 재규정하려는 Lister(2000)의 주장 등은 그 구체적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 양립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Liljestrom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보편적 일과 가족의 양립은 기존의 가족정책에 온전하고 있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는 방안이다. 이분법적 사고는 여성의 모성권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여성이 독립적 가구를 구성할 수 있는 물질 토대가 되는 노동권이 약화되고, 반대로 노동권에 대한 강조는 여성의 특수성에 근거한 모성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성권과 노동권의 문제는 'Wollstonecraft의 딜레마'와 같은 대립의 문제도 또는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다. 대립과 선택의 딜레마는 노동권과 모성권을 여성의 문제로 제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만약 Liljestrom의 주장과 같이 모성권과 노동권의 조화가, 즉 일과 가족의 양립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문제라면 두 권리의 대립은 현저히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구국가들 조차 성별차이에 근거하지 않는 보편적 일과 가족의 양립정책은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아버지 할당제(father's quate)와 남성과 여성의 휴가 기간을 동일하게 할당하고 있는 부모휴가제도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에서 실시하는 부모휴가는 형식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휴가기간이 동일하게 할당되어있지만 무급인 관계로 남성이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상 여성이 이용하는 경우도 저조해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sup>17)</sup> (Moss & Deven, 2000). 그러므로 보편적 양립정책은 아버지 할당제에 내재된 이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아버지 할당제(father's quate)는 부모휴가 기간 중 일정기간을 아버지에게만 부여하는 제도로 아버지가 아동양육을 어머니와 함께 나누게 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정책의 명칭과 대상만 놓고 보았을 때 아버지 할당제는 남성에게 특정한 아동양육휴가 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성 중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부모휴가의 대부분을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버지 할당제는 남성의 부모휴가사용을 제도화함으로써 남성이 아동양육의 책임을 여성과 함께 나눈다는 보편적 보살핌 모형을 지향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버지 할당제는 아버지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양육자라는 전제에 근거한 것이며, 더 나아가 아버지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Leria, 2002).

17) 그리스는 부부각각에게 3개월씩, 아일랜드는 각각 14주씩,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은 각각 6개월씩, 스페인은 아동이 3살 될 때까지, 영국은 각각 13주씩 무급부모휴가를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유럽국가 중 아버지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스랜드 등이다 (Leria, 2002, 1998). 역사적으로 아버지 할당제는 1970년대 스웨덴, 1980년대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제안되었으나 제도화되지 못했고, 1993년 노르웨이에서 최초로 제도화 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스웨덴과 덴마크가 제도화 하였다.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 스웨덴과 달리 아버지 할당제는 부모휴가의 확대 속에 도입되어 대상 남성의 70~80%가 제도를 이용하는 경이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다 (Leria, 2002). Eisenstein(1981)이 지적한 것과 같이 임신, 출산, 수유 등의 생물학적 모성을 제외하고 양육과 보살핌의 모성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정치적 모성이라면, 아버지 할당제는 아버지가 아동양육을 함께 나누는 책임을 제도화함으로써 새롭게 정치적부성의 창조를 시도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Pateman(2001[1988])<sup>18)</sup>이 주장한 것과 같이 부성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면 아버지 할당제는 아동양육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부성(좋은 아버지)을 사회적·정치적으로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아버지 할당제가 비록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보편적 양립이 지향해야 할 관점을 제시해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할당제는 몇 가지 주요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는 일과 가족의 양립에 있어 계층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우를 보면 아버지 할당제를 이용하는 주된 계층은 중산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Leria, 2002). 두 번째는 아버지 할당제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아동양육을 나누는 것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Pateman(2001[1988])은 부성은 사회정치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버지가 아동양육을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 회의적 견해를 제출하고 있다. 세 번째는 아버지 할당제가 오히려 성별 분업을 고착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아버지 휴가라는 명시적 제도로 인해 남성에게 그 휴가를 이용하는 것으로 부성의 책임을 다했다는 면죄부를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르웨이의 경우에서 보듯 남성들의 높은 아버지 할당제 이용률에 반해 성 중립적으로 제도화된 부모휴가기간 중 남성이 이용하는 비율은 7.3%에 불과하다 (Bruning & Platenga, 1999). 마지막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양육의 책임을 나누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아버지 할당제를 이용하지 않는 많은 남성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휴가 이용이 직장 내 승진 등 직업경력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Brandth & Overli, 1998, Leria, 2002 재인용). 즉 양육 등 재생산과 관련된 노동을 나누는 문제는 어쩌면 성별의 문제이기 이전에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Lasch(2004[1998])의 주장처럼 가정이 시장에 종속되지 않고, 가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지 않는 한 보편적 일과 가족의 양립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결국 마르크스주의의 논리처럼 (성별분업에 근거한) 부부중심의 가족이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자본에게 제공하고 있다면, 본질적으로 (성에 따른 구분이 없는) 보편적 일과 가족의 양립은 자본주의 체제와 가족자체의 변혁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McIntoch, 1978, 장지연, 2004 재인용; Eliot, 1992[1986]).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할당제를 통해 남성이 양육의 책임을 나누게 하는 정책은 보편적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진일보된 시도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18) 본 저자가 인용한 Pateman의 주장은 Pateman의 본래의 주장과는 다르다. 실제로 Pateman은 창조된 부성의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다. Pateman은 부성이 사회적으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양육을 함께 나누는다고 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창조된 부성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3. 가족정책의 재구조화

본 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가족정책을 둘러싼 주요한 논의에 근거해 가족정책을 성 통합적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4가지 주요한 주제에 대해 검토하고자한다. 먼저 가족정책의 관점에서는 성 통합적으로 가족정책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다음으로는 앞서 논의한 가족정책의 관점에 근거해 가족정책의 틀에 대해서 검토한다. 그리고 가족정책의 영역의 문제로 성 통합적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서 다루어져야할 가족정책의 내용들에 대해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관점, 틀, 영역(내용)의 논의에 근거해 성 통합적 가족정책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한다.

#### 1)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의 관점

가족정책이 가족 및 구성원의 관점에서 제반 사회정책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가족정책’에 요구되는 관점은 무엇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정책의 핵심적 과제라고 지목될 수 있는 일과 가족의 양립이 성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면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까? 문제는 그리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성 통합적 일과 가족의 양립이 가족정책의 핵심명제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가족정책의 관점’은 ‘일과 가족 양립의 주체가 누구인가?’와 ‘공·사적영역의 분리는 실제에 근거한 것인가?’라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접근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일과 가족 양립 문제는 현상적인 양립 여부의 문제로 이해하기 보다는 양립의 주체가 누구인가가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적 지점이다. 논의했듯이, 본 논문은 양립의 주체가 단위로써의 가족 대 시장, 여성 대 시장, 노동의 주체(여성·남성) 대 시장인가에 따라 ‘차이에 근거한 양립’, ‘순차적 양립’, ‘보편적 양립’으로 구분했다. 양립의 세 가지 형태구분의 기준은 특정한 성에게 그 성의 특성(차이)에 근거해 특정한 활동 영역과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이 문제에 대해 본 논문은 양립의 문제가 단위로써의 가족 대 시장으로 이해될 때 여성의 영역은 사적이라고 간주되는 가족 내로 제한되고, 양립의 문제를 여성 대 시장의 문제로 접근할 때 여성은 남성과 달리 시장과 가족의 이중적 부담을 감내해야함으로 여성의 온전한 시민권 확립을 제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즉 여성 시민권의 온전한 발현은 일과 가족 양립의 주체에 여성과 남성이 함께 포괄되는 성 통합적 관점이 견지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 통합적 재구조화의 첫 번째 토대는 정책의 대상에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고려되는 성 통합적 관점에 근거해야한다.

두 번째 가족정책의 관점은 가족을 둘러싼 근본문제가 자본주의의 출발과 함께 시민의 생활이 성별에 따라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으로 분리되었다는 믿음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출발해야한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실제로 분리되어있는가에 대한 진위여부가 아니다. 부정되어야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남성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세계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분리되어있다는 허구적 이데올로기이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은 분리되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이데올로기가 여성의 시민권적 권리를 배제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함으로써 소위 공적세계에서 남성권력을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Freedman, 2002[2001]).

구체적으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분리가 허구적 이데올로기에 근거했다는 주장은 두 가지 중요한 근거에 의해 뒷받침 된다. 첫째, 역사적·경험적으로 가족이 아무런 생산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적

영역이라는 주장과 그 시점이 산업화 이후라는 주장은 허구라는 것이다 (Eliot, 1992[1986]). 실제로 Middleton(1979, Eliot, 1992[1986] 재인용)은 서구에서 산업혁명이전에도 가족은 자급자족하는 단위가 아니었으며, 산업혁명이전인 16, 17세기에도 가족 구성원의 임노동이 가족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지금도 가족 내에서 스스로 만들고 고치는 활동과 가내 산업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Harris, 1983, Eliot, 1992[1986] 재인용). 둘째, 현실 세계에서 공·사적영역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Dahlerup, 1989) 그 구분이 점차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적영역의 주체라고 간주되는 여성의 시민권적 권리에 대한 보장은 가족이라는 사적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보육의 사회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등과 같이 소위 공적영역에서의 정치적 행동과 과정을 통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Pateman, 2001[1988]). 즉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2세대 페미니즘의 주장과 같이 개별적 여성이 일상적으로 사적영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바로 공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적이라는 의미를 적용했을 때 가구 밖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활동 중 개별자본가의 사적소유인 사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활동을 공적영역에서의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합의된 답을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Dahlerup, 1989).

정리하면 일과 가족 양립의 주체를 단위로서의 가족 대 시장 또는 여성 대 시장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실제에 근거하지 않는 공·사적분리의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가·사회는 공적인 가치(정의)와 사적인 가치(보살핌)를 대립시킴으로써 남성들이 가족 내에서 여성들이 수행하는 사적인 가치 즉 보살핌 노동에 의존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Lister, 1997, Freedman, 2003[2001] 재인용). 그러므로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의 관점은 허구적 공·사적 분리의 전체에 대한 부정에 근거해 일과 가족 양립을 성별 구분 없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 2)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의 틀

가족을 둘러싼 문제가 허구적 공·사적영역의 분리에 근거하고 이에 대한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가 주체의 관점에 근거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해도, 이러한 관점을 어떠한 틀 거리로 묶어 낼 것인가는 또 다른 과제다. 실제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틀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드물다. 가족정책의 틀 내에서 성 통합적 양립의 관점을 제시한 예는 Liljestrom (1978)가 거의 유일하다<sup>19)</sup>. Liljestrom(1978, 35쪽을 참고하라)은 가족정책의 틀로서 사회적 역할을 함께하는 가족모형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두 명의 시민이 생계부양과 여가를 함께 나누는 가족 형태를 제시했다. Sainsbury (1999), Fraser(2000), Lister(2000) 등의 논의에서도 생계부양자와 양육자가 통합되는, 즉 성역할이 공유되는 대안적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논의된 것이라기보다는 복지국가 체제라는 거시적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족정책의 문제를 접어 두고서라도 복지국가 체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에 관한 독자적인 논의는 문제제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sup>20)</sup>. 최근 김수정(2004)은 복지국가를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 물론 남성이 사적영역의 문제라고 간주되는 아동양육을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여러 페미니스트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의 로시(1977, Eliot, 1992[1986] 재인용), 오클리(1976, Eliot, 1992[1986], 재인용), Chodorwo(Freedman, 2002[2001] 재인용), 길리건(1982, Freedman, 2002[2001]과 Lasch, 2004[1998]에서 재인용)은 모성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으로 남성이 양육책임을 나누는 것이 사회화과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최근의 Lister(2000)는 여성의 시민권에 근거해 남성을 재규정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함께 보살핌노동을 담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고, 가족(지원)정책을 어머니와 아동의 필요에 대한 국가의 지원문제로 정의함으로써 (의도적이었던 아니었던 관계없이) 남성을 가족정책의 논의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다만 김인숙, 정재훈, 윤홍식(2004)과 선우덕, 황나미, 송현중, 박영란, 윤홍식, 김남수(2004)의 글에서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틀에 대한 고민들이 시도되었다<sup>20)</sup>.

그렇다면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성 통합적으로 재구조화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서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선다는 것은 여성과 남성이 노동을 수행한다는 관점에서는 통합적이지만 서로의 이해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개별적 이해를 갖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여성이 가족 내에서 수행하는 보살핌의 책임에 대한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 현실에서 여성에게 일과 가족의 양립은 절박한 문제이다. 그러나 양립의 문제가 여성 대 시장의 문제로 제한되는 한 남성에게 (노동시장 참여와 관계없이 여성이 여전히 보살핌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양립문제는 제3자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족정책의 틀 거리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노동을 행하는 공통의 주체라는 통합적 관점과 각각의 주체가 상이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이 노동을 행하는 공통의 주체로서 인식된다는 것은 허구적 공·사적분리에 의해 평가 절하되었던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보살핌 행위가 시장에서의 남성의 노동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족 내에서 행하는 여성의 보살핌에 대해 '노동'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살핌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은 보살핌을 여성의 최우선 과제로 부여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거부되고 있다는 Lasch (2004[1998])의 주장과<sup>22)</sup> 달리 많은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오히려 Fraser(1994, 김혜경, 2004, 재인용)의 주장처럼 보살핌의 행위가 '노동'으로써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남성과 여성과 같이 보살핌 노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족 내에서 행해지는 보살핌 노동을 시장에서 행해지는 노동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할 때 여성과 남성은 '노동자'로서 동일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고,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의 틀은 이러한 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보살핌 행위에 대해 '노동'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여성이 행하는 노동과 남성이 행하는 노동의 내용은 상이하다. 상이하다기 보다는 대부분의 여성은 가사노동과 시장노동 양자에 걸쳐 중첩된 이해가 있는데 반해 남성의 이해는 대부분 시장노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의 틀은 동일한 노동의 수행자로 여성과 남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하지만, 남성과 여성이 상이한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는 현실 또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합적이지만 상이한 여성과 남성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행하는 '노동'을 성격에 따라 구분하기 보다는, 노동을 행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체(남성과 여성)의 상이한 이해를 노동의 성격에 따라서 가족 내에서 수행하는 보살핌(재생산)노동과 시장에서의 생산노동으로 구분할 때 우리는 허구적 공·사적영역의 분리가 직면한 문제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현실적

20) 김혜경(2004)은 구체적으로 보살핌노동에 대한 성 통합적 접근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이혜경·홍승아(2003)는 복지국가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을 제기하면서 성 통합적 관점에 근거한 보편적 돌봄노동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고 있다.

21) 김인숙 외(2004)의 논의는 선우덕 외(2004)의 초보적 논의를 발전적으로 수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선우덕 외(2004)의 167쪽에서 173쪽과 김인숙 외(2004)의 24쪽에서 39쪽을 참고하라.

22) Lasch는 페미니스트들이 모성권에 기반 한 일련의 제도들(육아휴직 등)에 대해 성별분업을 고착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으로 가족 내에서 수행되던 많은 재생산 노동이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반대로 Harris(1983, Elliot, 1992[1986] 재인용)의 지적과 같이 가족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노동을 재생산 노동이라고 규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재생산 노동은 무급노동이라는 통념과 달리 시장에서 행해지는 재생산노동은 생산노동과 같이 유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재생산노동=무급=가족=여성, 생산노동=유급=시장=남성이라는 이분법적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족정책의 틀은 노동하는 주체가 노동을 행하는 장소에 따라 시장과 가족영역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를 위한 틀이 노동주체가 행하는 노동의 장소에 따라 시장과 가족영역으로 구분할 때 얻어지는 유용성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개별 가족구성원의 복지는 시장과 가족영역에서의 동시적 개입을 통해 충족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가족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개별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어떤 특정영역에 제한되는 것은 개별구성원에게 대단히 위협한 상황에 직면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홍식, 2003). 예를 들어, 결혼해체가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결정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여성의 역할이 가족영역에 제한된다는 것은 대단히 위협한 선택이다. 둘째는 가족정책의 주요한 과제가 허구적 공·사적영역의 분리에 근거한다는 페미니즘의 본질적 문제의식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여성의 이해는 시장과 가족영역에서 중층적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남성의 이해는 시장영역에만 나타나는 여성과 남성간의 노동하는 장소의 불일치를 통해 우리는 차이와 평등의 문제가 여전히 가족정책의 중요한 문제임을 반영할 수 있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암묵적 전제인 가족 구성원의 이해가 동일하기 때문에 단위로서 가족의 이해와 개별 가족구성원의 이해가 같다는 전제를 부정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성이 여전히 가구 내 보살핌 노동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다면 여성의 이해는 시장영역과 가족영역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남성의 이해는 주로 시장영역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3) 노동하는 장소에 근거한 가족정책의 영역·내용

<표 2>은 가족정책을 가족 구성원(주로 부·모)이 행하는 노동의 장소를 중심으로 구분하는 틀에 근거해 가족정책의 영역을 시장과 가족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시장영역의 가족정책의 핵심적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가족 구성원이 소득활동을 하기위해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 또는 완화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조건의 평등과 관련된 문제인데 가족 구성원(주로 여성)의 노동권 보장과 관련되는 정책으로, 가족 구성원의 노동력의 상품화 (commodification) 및 보살핌 노동의 탈가족화 (de-familialization)와 연관된 정책이다<sup>23)</sup>.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의 노동력의 상품화는 가족 내에 존재하는 보살핌의 필요가 가족 밖에서 충족될 때, 즉 사회화될 때 가능하므로 상품화는 필연적으로 보살핌의 탈가족화를 수반한다. 실제로 통계청(2002)의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30대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육아와 가사부담을 지적한 비율이 무려 6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정책을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이해했을 때 시장영역의 주요한 정책내용은 이러한 장애를 완화시킴으로써 가족 구성원(주로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대표적 정책으로는 <표 3>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보육의 사회화, 방과 후 프로그램, 성폭력 등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직장 내)성폭력 등에 관한 문제는 그간 가족정책의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부분인데, 여성노동자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으

23) 여기서 언급하는 상품화, 탈상품화, 가족화, 탈가족화의 문제는 다음절에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조형·강인순·정진주, 2003) 직장 내 성희롱은 가족 구성원, 특히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성희롱으로 인해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시장에서 가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전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관계없이) 여성에게 보살핌의 책임을 강제하게 되는 것이다. 즉, 성희롱과 같은 노동시장의 장애요인이 여성에게 위협한 선택인 차이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성희롱과 관련된 정책은 시장영역에서 가족구성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성 통합적 가족정책의 영역: 목적

가족정책의 목적	
시장영역 가족정책: 노동권 보장	가족 구성원이 노동시장에서 노동권을 행사하기(일하기) 위해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 또는 완화하는 정책
가족영역 가족정책: 부모권 <sup>24)</sup> 보장	가족 구성원이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 또는 완화하는 정책

더 나아가 시장영역에서의 노동권 보장 정책은 가족 구성원의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을 위한 전제를 충족시킨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사회보험의 수급권은 시장영역에서의 노동을 전제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회보험의 수급권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sup>25)</sup>. 다만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의 수급권이 단순히 노동시장에서의 취업문제에 근거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정규직 대 비정규직 등)에 근거해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시장영역에서의 노동권 보장이 반드시 사회보장 수급권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요인을 제거한다는 관점에서 시장영역의 가족정책은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 고용보장이라는 과제를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3> 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성 통합적 가족정책의 영역: 정책사례

가족정책의 사례	
시장영역 가족정책: 노동권 보장	(공공)보육, 방과 후 프로그램, 직장보육, 노동시간 선택제도, 성폭력 등에 관한 법률, 고용평등법 등
가족영역 가족정책: 부모권 보장	모성휴가, 부성휴가, 보무휴가(육아휴직제도), 아버지 할당제, 양육수당, 양육임금, 주부연금, 가족(아동)수당 등

다음은 가족영역과 관련된 정책이다. 여기서 핵심적 과제는 가족구성원이 가정 내에서 보살핌이 필요

24) 본 논문에서 부모권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할 권리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권리와 어머니가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할 권리를 통합한 개념이다. 더불어 가족권이라고도 지칭할 수 있는데 이는 가족 구성원이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가족구성원을 보살필 권리라는 개념으로 자녀를 양육할 권리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 논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권리의 개념이다.

25)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여성에 대한 탈상품화는 상품화를 전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 또는 완화하는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영역의 정책은 가족 구성원의 노동력의 가족화((re)familialization)와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를 수반한다. 여기서 가족화는 가족구성원이 노동시장에서 나와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보살핀다는 의미이고, 탈상품화는 가족구성원이 가족 내에서 다른 구성원을 보살핌으로써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소하는 소득을 보존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 또는 모가 가족 내에서 아동을 돌보기 위해 노동시장으로부터 나올 경우 소득이 감소(상실)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가구는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시장에서 노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또는 가족 구성원)의 부모권 실현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족영역의 가족정책의 핵심적 과제인 것이다.

대표적 정책사례는 현재 여러 국가에서 유급으로 시행하고 있는 모성, 부성, 부모휴가, 아버지 할당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정책은 아버지 할당제이다. 아버지 할당제는 남성이 가족 내에서 자녀를 보살필 권리와 책임을 제도화함으로써, 남성의 이해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시장과 가족이라는 이중적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남성(아버지)이 자녀양육의 책임을 나누고 싶어도 현실적 조건이 이를 제약하고 있다면, 이러한 현실적 조건은 남성의 부모권 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인임에 분명하다. 실제로 스웨덴에서 남성이 부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남성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휴가를 사용을 했을 경우 여성이 사용했을 경우보다 더 심각한 직업경력 상의 단결과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Widerberg, 1991, Leria, 2002 재인용).

정리하면 성 통합적 재구조화의 틀에 근거한 가족정책의 영역(내용)은 노동을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가족 내에서 행하는 살핌 노동에 대한 부모권(모성권+부성권)과 시장영역에서 행하는 노동권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와 관련된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과 관련된 이해를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근거해 검토함으로써 가족정책을 성 통합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지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후 가족정책의 방향에서 제시할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 4)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의 방향

재구조화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첫째는 세계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허구적 가정에 대한 부정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첫 번째 언급한 대안과 관련해 구체적 가족정책이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먼저 첫 번째 주제와 관련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러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주장되었던 것과 같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가 생계부양자와 보살피는 자의 역할을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보편적 생계부양자와 양육자의 실현을 위해 여성에게는 시장영역으로의 진입, 즉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상품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내고, 남성에게는 정책논의의 대상에서 그 동안 간과되었던 가족영역에서의 보살핌의 책임을 여성과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첫 번째 방향에 근거한다면 가족정책은 그 동안 Wollstonecraft의 딜레마라는 명제 하에 대립적으로 이해되던 노동권과 부모권(모성권)의 문제를 특정한 성의 문제가 아닌 여성과 남성의 공통의 문제로 전환할 수 있다. 만약 양육과 돌봄의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의 공통의 문제라면 노동권과 모성권(부모권)의 대립은 현저히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이 함께 부모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동안 부모권(모성권)의 행사로 인해 노

동시장에서 감내해야하는 불이익이 여성만이 아닌 여성과 남성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권 행사로 인한 불이익을 남성과 여성이 함께 나눈다고 해서 그 불이익이 일거에 사라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부모권 행사로 인한 불이익이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현저히 완화될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문제는 구체적 정책이 어떠한 방향에 근거하는가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는 현격히 차이가 날 것이다. 즉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성별분리에 근거한 공·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키려 해도 그 결과는 개별정책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개별 가족정책이 가지는 정책방향은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언급된 정책들은 모두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들이지만 차이와 평등의 문제에서 논의 했듯이 각각의 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상이하다. 먼저 노동의 주체가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가족 구성원을 보살필 권리를 보장하는 가족화는 그 권리가 상품화(commodification)를 수반하는가,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를 수반하는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양육수당(care-wage)과 부모휴가(parental leave), 아버지 할당제는 부·모가 자녀를 가족 내에서 돌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모의 노동력을 가족화 시킨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가족화에 수반되는 정책방향은 상이하다. 양육수당의 경우 가족화는 부·모가 가족 내에서 행하는 보살핌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화폐적 보상을 함으로써 보살핌 노동을 제공하는 주체의 노동을 가족 내에서 상품화 시키는 것이다. 반면 부모휴가는 부·모가 노동시장에서 나와 자녀를 보살필 때 발생하는 노동 소득상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부·모의 노동력을 탈상품화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두 정책의 차이는 앞서 차이와 평등의 논의에 근거했을 때 상이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향하는 것이다. 양육수당은 보살핌 노동을 제공하는 주체의 노동을 가족 내에서 상품화시킴으로써 차이에 근거한 양립정책을 지향한다. 반면 부모휴가는 노동 주체가 제공하는 보살핌을 시장에서의 탈상품화에 근거해 보장함으로써 순차적 또는 보편적 양립정책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sup>26)</sup>.

<표 4> 가족정책의 가족화·탈가족화·상품화·탈상품화

		(재)가족화 (Re)familialization	탈가족화 De-familialization
상품화 Commodification		모성임금, 양육(돌봄)수당, 주부연금	아동양육시설, 가정보육사, 노인요양시설
탈상품화 De-commodification	성 분리	모성휴가, 아버지 할당제 ▲ 부상휴가,	해당사항 없음.
	성 통합	부모휴가 ▼	

더 나아가 탈상품화 정책도 구체적으로 보면 성 분리적인가, 성 통합적인가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표 4>의 내용과 같이 모성휴가, 부모휴가 등은 대부분 여성이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성 분리에 근거한 탈상품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아버지 할당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 대상이 남성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성 분리적 탈상품화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남성이 여성과 자녀 양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게 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성 통합적 탈상품화 정책이라고 할 수

26) 여기서 부모휴가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사용되어 질 때 우리는 부모휴가를 보편적 양립제도로 간주 할 수 있지만, 부모휴가가 현재와 같이 특정성이 사용하는 제도라면 부모휴가는 순차적 양립의 형태를 지향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 분리와 통합의 문제는 순차적 양립과 보편적 양립정책을 구분하는 핵심적 기준이 되는 것이다. 결국 차이에 근거한 양립과 순차적 양립정책이 여성의 영역을 사적영역으로 제한해 여성의 시민권을 근본적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가족 구성원의 노동의 가족화 정책에서 상품화를 동반할 것인가 아니면 탈상품화를 성 분리에 근거할 것인지, 성 통합에 근거할 것인지는 가족정책에 있어 매우 주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탈가족화와 관련된 정책은 가족 구성원의 보살핌에 대한 필요를 가족 밖에서 충족시킴으로써 가족 구성원(부모)의 노동력을 상품화시킨다. 다만 가정보육사와 같이 해당 가족이 가정 내에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을 고용할 경우 가족 구성원의 노동력의 상품화는 다른 노동주체(주로 여성)의 노동력의 상품화와 동반하여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가족화 정책과 달리 탈가족화 정책이 가족구성원의 노동력의 탈상품화를 수반하는 정책은 현실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이태리의 경우 여성 노동력의 상품화가 대단히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3세에서 6세까지의 아동양육에 대한 탈가족화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sup>27)</sup> (Sala, 2002).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아동양육의 탈가족화가 노동주체의 탈상품화<sup>28)</sup>를 수반하고 있지는 않다.

정리하면 성 통합적으로 재구조화된 가족정책의 방향은 상대적으로 남성에게는 보살핌 노동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여성에게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의 노동을 강조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이해를 시장영역과 가족영역에 동시에 배치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 정책에서 가족화-(성 통합적)탈상품화와 탈가족화-상품화의 조합을 가족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보편적 일과 가족의 양립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보살핌의 주체이자 시장에서의 노동활동의 주체로서 이중적 정체성을 제도화해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문제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허구적 공·사적 영역의 분리에 대한 성 통합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4. 정리 및 한국 가족정책에 대한 함의

2003년 말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건가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우리사회는 명시적으로 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건가법에 적시된 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이 가족의 전통적 기능과 형태의 강화라는 측면에 집중됨으로써 현재 우리사회의 가족변화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내올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홍식, 2004). 실제로 서구의 경험을 반추해 보았을 때 가족 변화의 주요한 현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저출산, 이혼, 빈곤의 여성화는 전통적 가족형태와 가치의 강조를 통해서만 해소될 수 없다 (Esping-Andersen, 1996; Sleebos, 2003; 윤홍식, 2004). '전형적 가족'에 대한 강조는 기든스(2000[1998])의 주장처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일 수 있다. 경험적 증거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과 낮은 빈곤율이 전통적 가족형태와 가치를 강조하는 않는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Misra & Moller, 2005). 더욱이 Esping -Andersen(1996)의 지적처럼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재규정이 후기산업사회 변화의 핵심이라고 했을 때 전형적 가족에 대한 강조는 후기산업사회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7) 실제로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41%에 불과한데 반해 (Bradshw et al., 1996, Esping-Andersen, 1997 재인용), 3세에서 6세까지 아동의 90%가까이가 (대부분) 국공립 유치원에 등록되어 있다 (Sala, 2002).

28) 탈상품화를 수반하려면 노동주체가 노동시장에서 나옴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상실을 보존해주는 효과가 있어야한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노동주체(여성)에 대해서 탈상품화가 수반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있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 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사적영역의 분리를 (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부모권(모성권+부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해 한국 가족정책에 대한 함의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여성 노동력의 상품화는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여성 노동력의 상품화 문제가 아니라 출산과 양육으로 대표되는 보살핌 노동의 사회화(탈가족화) 전략을 수반함으로써 여성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과제가 Orloff(1993)가 주장했듯이 탈상품화에 선행하는 여성 노동력의 상품화를 보장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과제는 가족 내의 보살핌 노동의 책임을 남성과 여성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책을 제도화함으로써 보편적 일과 가족의 양립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지국가 성립의 과제로서 여성 노동력의 상품화 및 보살핌 노동의 사회화와 함께 복지국가 재편의 과제로서 보편적 보살핌을 함께 지향해야한다는 것이다. 일견 단계적 과제로 간주될 수 있는 두 가지 과제가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 이유는 한국 가족의 변화가 서구사회의 변화 속도와 정도를 넘어 급격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3년 1.19로 서구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이태리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므로 가족의 변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은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으로 대표되는 보살핌 노동의 사회화를 통해서만은 완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가구 내 생계부양자가 남성 1인에서 여성과 남성 2인으로 이전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살핌 노동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여성에게만 묻는다면 여성은 더 이상 출산과 양육을 양립 가능한 선택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급격한 가족의 변화에 직면한 우리에게 '보편적 생계부양자'와 '보편적 양육자'에 대한 지향은 단계적 과제가 아닌 동시적 과제인 것이다. 더욱이 결혼해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집중하고 있는 한 부모가족을 고려했을 때 '보편적 생계부양자와 양육자'를 구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족정책의 과제이다. 왜냐하면 한 부모에게 있어 생계부양과 보살핌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부모가족이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가는 해당 국가가 보편적 양립정책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준거가 되는 것이다 (Millar, 1996, Misra & Moller, 2005 재인용). 즉, 보편적 생계부양자와 보살피는 자를 전제한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의 구현은 가족의 형태가 급격히 다양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현재 한국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의를 점진해 보면 논의의 중심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득보장에 집중되고 있다. 여전히 가족정책은 한국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주체이

기보다는 시장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복지정책의 부차적 부문으로 치부되고 있다. 저출산과 결혼해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가족을 둘러싼 변화에 대한 대응은 당위적 선언을 되풀이할 뿐이다. “남기만 하십시오. 국가가 키워드리겠습니다”라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발언이 공허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 근거한 것이다. 가족정책의 과제가 가족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초석이 20세 초 가족과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역사적 경험을 천착할 때 복지국가의 초입에 있는 우리에게 가족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더구나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저출산과 결혼해체로 대표되는 가족의 변화에 대한 대응은 보수와 진보가 함께할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만약 가족변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위기의식을 ‘보편적 일과 가족의 양립’이라는 가족정책의 핵심적 과제로 담아 낼 수만 있다면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전형으로써 한국 복지국가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성천. 2000. 한국가족복지정책의 재조명: 문제점과 개혁방향의 모색. 한국가족복지학. 제5호, pp. 71-102.
- 김수정. 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한국사회학, 제38집 5호, pp. 209-233.
- 김인숙·정재훈·윤홍식. 2004. 가족정책의 성인지적 관점 강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김태홍·김난주. 2003.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의 실시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김혜경. 2004. 보살핌 노동의 정책화를 둘러싼 여성주의적 쟁점: 경제적 보상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0권 2호, pp. 75-106.
- 미야모토 타로, 2003[1999]. 복지국가 전략: 스웨덴모델의 정치경제학, 임성근 옮김. 논형.
- 박순우. 2004. T. H. Marshall 시민권론의 재해석. 사회복지정책, 제20집, 87-108.
- 변화순. 1995. 가족정책 연구의 관점과 쟁점, 그리고 자리매김. 대한가정학회 제48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21-43.
- 선우덕·황나미·송현종·박영란·윤홍식·김남수. 2004. 인구고령화와 보건복지대책: 노인여성가족부 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양옥경. 2002.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복지의식 연구: 서울지역 기혼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51, pp. 229-256.
- 월렌스키, H., 루버트, G., 한, S., & 재미슨, A. 1992[1982]. 비교사회정책. 남찬섭 옮김. 한울 아카데미.
- 윤홍식. 2003. 이혼 및 별거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와 사회안전망의 역할: 미국의 사회안전망의 대응과 한국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제53호, pp. 51-73.
- 윤홍식. 2004. 가족의 변화와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응: 한국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정립을 위한 고찰. 한국가족복지학, 제14호, pp. 263-293.
- 이미경. 1999. 신자유주의적 ‘반격’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페미니즘적 비판의 쟁점들. 공감.
- 이진숙. 2003.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검토. 2003년 가족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21-46,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 이혜경·홍승아. 2003. 성통합적 복지국가 재편 논의를 위한 여성주의적 비판. 사회보장연구. 19(1), pp. 161-189.
- 장지연. 2004. 복지국가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의 기여와 한계. 한국사회학, 제38집 3호, pp. 177-200.
- 장혜경·김혜경·이진숙·김현주·장화경. 2002.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 연구. 여성개발원.
- 조형·강인순·정진주. 2003. 여성의 시민적 권리와 사회정책: 한국 여성노동자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울 아카데미.
- 최경석·김양희·김정천·김정윤·박정윤·윤정향. 2001.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 통계청. 2002. 사회통계조사.
- Becker, G. 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Enlarged 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ergqvist, C. & Nyberg, A. 2002. Welfare state restructuring and child care in Sweden. In Michel, S. & R. Mahon eds.,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pp. 287-308. New York: Routledge.
- Branne, J. & Moss, P. 1997. Government policy. In Ungerson, C. & M. Kember eds., Women and social policy: A reader (2nd ed.). Macmillan.
- Bruning, G. & Plantenga, J. 1999. Parental leave and equal opportunities: Experiences in eight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9(3), pp. 195-209.
- Charles, N. 2000, Feminism, the state and social policy. Great Britain: Macmillan Press LTD.
- Chiswick, D. & Lehrer, E. 1990. On marriage-specific human capital: Its roles as a determinant of remarriag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3, pp. 193-213.
- Coontz, S. 1992. The way we never were: American families and the nostalgia trap. NY: Basic Books.
- Dahlerup, D. 1989. 개념의 혼돈-현실의 혼돈: 가부장제 국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싸쑤, 앤 편, 여성과 국가: 국가정책과 여성의 공사영역의 변화. 한국여성개발원.
- Duncan, G. & Hoffman, S. 1985. A reconsideration of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marital dissolution. Demography, 22, pp. 485-497.
- Durkheim, E. 1960[1933].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New York: Free Press.
- Eisenstein, Z. 1981. The radical future of liberal feminism. New York: Longman.
- Elliot, F. 1992[1986]. 가족사회학. 을유문화사.
- Esping-Andersen, G. 1996. After the golden age? Welfare state dilemmas in a global economy. In Esping-Andersen ed.,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CA: Sage Publications.
- Esping-Andersen, G. 1997. Welfare states at the end of the century: The impact of labour market, family and demographic change. Social Policy Studies, No. 21: Family, market and community: Equity and efficiency in social policy, pp. 63-80. OECD.
- Fraser, N. 2000. After the Family Wage: a Postindustrial Thought Experiment. In B. Hobson, ed, Gender and Citizenship in Transition, pp. 1-32. Routledge.
- Freedman, J. 2002[2001]. 페미니즘, 이박혜경 옮김. 이후.

- Gauthier, A. 1996. *The state and the family: A comparative analysis of family polici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iddens, A. 2000[1998]. 제3의 길. 한상진·박찬욱 옮김. 생각의 나무.
- Gilbert, N. & Specht, H. 1986.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2nd ed.). NJ: Prentice-Hall.
- Hanson, T., McLanahan, S., & Thomson, E. 1988. Windows on divorce: Before and after. *Social Science Research*, 27, 329-349.
- Harding, L. 2000[1996]. 가족정책을 위한 탐색.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한국여성연구회 옮김, pp. 201-229. 새물결.
- Kammerman, S. & Khan, A. 1978. Families and the idea of family policy. In Kamerman, S. & A. Khan, eds., *Family policy: Government and families in fourteen countries*, pp. 1-16.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asch, C. 2004[1998]. 여성과 일상생활, 오정화 옮김. 문학과 지성사.
- Leria, A. 1998. The modernisation of motherhood. In Drew, E., R. Emerek,, & E. Mahon, *Women, work and the family in Europe*, pp. 159-169. New York: Routledgd.
- Leria, A. 2002. *Working parents and the welfare state: Family change and policy reform in Scandinavia*.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wis, J. & Ostner, I. 1995. Gender and evolution of european social policy. In Leibfried, S. & P. Pierson (eds.), *European social policy: Between fragmentation and intergration*. NY: The Brookings Institution.
- Lewis, J. 1993. Introduction: Women, work, family and social policies in Europe. In Lewis, J. ed., *Women and social policies in Europe: Work, family and the state*, pp. 1-24. VM: Edward Elgar.
- Liljestrom, R. 1978. Sweden. In Kamerman, S. & A. Khan, eds., *Family policy: Government and families in fourteen countries*, pp. 19-48.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ister, R. 2000. Dilemmas in engendering citizenship. In Hobson, B. ed., *Gender and citizenship in transition*, pp. 33-83. Routledge.
- Lorber, J. 2005[2001]. 젠더불평등: 페미니즘 이론과 정책, 최은정·임소희·임혜련정광숙 옮김. 일신사.
- Mahon, R. 2002.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through the lens of child care. In Michel, S. & R. Mahon eds.,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pp. 1-27. New York: Routledge.
- Misra, J. & Moller, S. 2005. Familism and welfare regimes: Poverty, employment and family policies. LIS working paper no. 399.
- Moss, P. & Deven, F. 2000. Parental leave: Progress or pitfall. Brussels, Moss, P. & F. Deven, eds. NIDI/CBGS Publications.
- O'Conner, J., Orloff, A., & Shavr, S. 1999. *States, markets, families: Gender, liberalism and social policy in Australia, Canada,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rloff, A. 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3), pp. 303-29.
- Ozawa, M. & Yoon, H. S. In press. "Leaver" from TANF vs. AFDC: How do they fare economically. *Social Work*.
- Parsons, T. & Bales, R. 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 Pateman, C. 1987. The patriarchal welfare state. In Gutman, A. ed., *Democracy and welfare state*. pp. 231-260.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ateman, C. 2001[1988].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이충훈·유영근 옮김. 이후.
- Sainsbury, D. 1999. Taxation, family responsibilities, and employment. In Sainsbury, D. (ed.),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New York: Sage Publication.
- Salsa, V. 2002. Modernization and welfare-state restructuring in Italy: The impact on child care. In Michel, S. & R. Mahon ed.,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pp. 171-90. New York: Routledge.
- Sleeboos, J.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 Valiente, C. 2002. The value of an educational emphasis: Child care and restructuring in Spain since 1975. In Michel, S. & R. Mahon ed.,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pp. 57-70. New York: Routledge.
- Wollstonecraft, M. 1988[1972]. A vindication of the right of women: An authoritative text backgrounds the Wollstonecraft debate criticism. In Poston C. ed., 2nd ed. New York: W · W · Norton & Company
- Zimmerman, S. 1992. *Family policies and family well-being: The role of political culture*. CA: Sage Publication.
- Zimmerman, S. 1995. *Understanding family policy: Theories & applications (2nd ed.)*. CA: Sage Publication.